



'15학년도 상반기 행정감사 사례집

'16.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과)

CONTENTS

I	제1장 수업 · 시험 관리분야	1
II	제2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5
III	제3장 보안 관리 분야	11
IV	제4장 회계 관리 분야	13
V	제5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16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1

수업·시험관리 분야

출석수업 강사 변경 절차 미이행

출석수업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강사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구비서류를 징구한 후 강사 추천 또는 위촉을 하고 내부결재 등의 위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 변경 시에도 위촉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1. 1학기 1명, 2012. 1학기 3명, 2012. 2학기 2명, 2013. 2학기 1명 등 총 7명의 출석수업 강사를 변경하면서 변경 및 위촉 행위(내부결재 등)를 하지 않고 출석수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석사학위소지자 강사 위촉 부적정

출석수업 강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협력대학 및 타 대학(2년제 포함)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이나 부득이한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는 강의경력(90시간 및 2학기 이상)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으로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교과목(2011. 1,2학기)과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2011. 2학기, 2012. 2학기, 2014. 2학기) 교과목 시간강사를 위촉하면서 석사학위소지자 ○○○ 등 2명을 단과대학장의 자격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촉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강사 위촉 부적정(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위촉 배제)

시간강사 위촉 시 전(前)학년도 동일 학기 출석수업 강의평가 결과 평균 하위 10%미만인 자는 해당 지역의 해당 교과목 위촉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2. 2학기 ~ 2015. 1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전년도 강의 평가결과 하위10% 미만인 자에 해당되는 ○○○ 등 65명을 학과 추천이라는 사유로 재위촉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반편성 부적정

출석수업 반편성은 지역대학 실정에 맞도록 하되 강의실 사정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30명 미만으로 분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반편성 시 총 2,233반을 편성하면서 수강률 추이, 시설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소홀히 하여 수강인원 30명 미만인 반이 720반(32.2%)이 되도록 운영하였으며, 이 중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반이 234반(10.5%)에 달하는 등 강의실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소수 인원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소수반 합반, 수업 지역 통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센터에 2014학년도 2개학과(경제학과 4학년, 무역학과 4학년), 2015년 1학기에 3개학과(경제학과 3,4학년, 관광학과 3학년, 무역학과 3,4학년)의 출석수업을 추가 실시하는 등 출석수업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부적정

2011년도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배율 기준은 수강인원이 1~70명은 1시간당 55,000원(1배), 71~120명은 82,500원(1.5배), 121~200명은 110,000원(2배)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 1학기 중에 1학년 청소년교육과 출석수업과목 중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 8시간 강의를 한 시간강사 ○○○에게 수강인원 118명에 해당하는 1.5배 단가인 82,500원을 적용하여 660,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수강인원을 123명으로 오류 산출하여 지급단가를 2배인 110,000원으로 적용하고 880,000원을 지급하여 220,00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 강사료 및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출석수업 강사료는 수강인원 기준으로 지급하며, 최소 수강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고, 출석수업 강사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참고로 직업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업, 비전업 강사 구분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 2학기 미디어영상학과 및 문화교양학과 1학년 「대학영어」 과목의 출석수업을 타 학과와 합반 운영하여 해당 강의실에서는 실제 출석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적처리를 하여 ○○○ 등 2명의 시간강사에게 총 880,000원의 강사료(일반회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3. 2학기 및 2014. 2학기에 출석수업 강사를 위촉하면서 ○○○ 등 2명의 비전업 강사를 전업강사로 분류하여 240,000원의 강사료 및 60,000원의 연구보조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출석수업시험 성적처리 기한 미준수

출석수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채점을 완료하고 14일 이내 인터넷을 통해 학생이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출석수업 운영계획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3. 1학기 ~ 2014. 2학기까지 14일 이내에 채점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총 266건이며, 그 중 30일 초과 75건, 60일 초과 27건으로 성적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 학생 불편 및 민원을 초래하는 등 출석수업시험 채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1. 2학기 ~ 2015. 1학기까지 14일 이내에 채점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이 총 2,284(15.6%)건이며, 그 중 30일 초과 565건, 60일 초과 103건으로 성적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 학생 불편 및 민원을 초래하는 등 출석수업시험 채점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각종시험 결시자 인정 처리 부적정

각종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결시한 학생 중 결시자 인정범위에 해당 된 경우 지역대학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중간평가(중간, 출석수업대체, 출석수업) 시험에 결시한 학생들은 기말시험 성적만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인정 해주고, 중간평가를 응시한 학생이 기말시험에 결시한 경우에는 기말추가시험으로 환산 성적을 인정해주어 지속적인 학업 성취 의욕을 고취시켜 중도 탈락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학년도 ~ 2014학년도까지 소속 지역 학생들의 시험별 결시자 인정 처리 과정에서 결혼과 자격증 시험응시에 따른 해당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하나, 영문학과 ○○○ 외 3명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였음에도 승인 처리하여 성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제 2 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2

복무·서무관리 분야

일용인부임 지급 부당

일용인부 사용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및 임금 등을 기재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고,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대학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연도별)에 따라 일용인부 사용은 당해 업무의 업무량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단기간)으로 사용해야 함

근 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일부 일용인부의 임금대장을 누락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유아방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2명(○○○, ○○○)을 2013.3.8.부터 6.15.까지 고용하고, 동 3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의 주휴수당 1일분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 없이 2명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일분을 지급하지 않아 ○○○ 129,000원, ○○○ 86,000원 총 215,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실습실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 ○○○, ○○○ 2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2011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산실습실 사용이 적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일용인부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자체 전보발령 부적정

지역대학장에게 소속 직원의 시·군학습관 전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임용 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 전보 결과를 제출서식에 의거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대학 순환전보는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근 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22조 및 제25조,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학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총 14회의 업무분장을 실시하기 전에 자체전보 발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동 업무분장 후 전보 결과를 제출서식에 의거 보고 하지 않았으며, 3명의 직원은 현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업무분장으로 전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부적정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과 업무가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제62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우리대학 2007~2008년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총무과5028, '07.10.25)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4. 1월부터 2015. 5월 현재까지 인계·인수서 관리 실태를 표본 확인한 결과, 학내 인사발령 등에 따라 총 14회의 업무분장을 실시하였으나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대상 총 58건 중 20(34%)건만 작성하고 업무편람은 모두 누락되었으며 38(66%)건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병가 사용 부적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 연간누계 사용일이 7일 이상인 경우는 전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질의응답 사례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2015. 5월 현재까지 병가사용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 등 2명은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한 일수가 총 6일(2012년 2일, 2013년 3일, 2014년 1일)이며, 동 6일을 전체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총 419,5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내 출장비 지급 부적정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각종시험(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계절수업시험)의 경우 관리·감독관 사전 교육 수당 20,000원/인·일('12학년도 기준), 21,000원/인·일('13학년도 기준)을 중식비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시험당일 관리요원 및 감독관의 경우 식비를 공제하여야 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 각종시험 시행계획,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1. 4월 ~ 2014. 4. 10.까지 각종시험 운송 및 관리자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한 2011학년도 하계 계절수업시험 출장자 2명에게 일비의 2분의1 상당액의 감액 없이 총 20,000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2학년도 동·하계, 2013학년도 하계 계절수업시험 관리요원 출장자에게 총 3회(12명)에 걸쳐 시험당일 식비를 감액 없이 총 84,000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있음

출장여비(친지 숙박비) 지급 부적정

국내 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여비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원(가족)거주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질의응답 사례집

사례 ○○지역대학 학장 ○○○는 2011.4.21.부터 2013.5.18.까지 '12년도 대학원 최종합격자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 참석 등 명목으로 총 49회 동안 본인의 원(가족)거주지인 서울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친지 숙박비 1,540,000원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등 2011.1월부터 2015.3월까지 원(가족)거주지와 동일한 직원 3명이 합계 3,120,000원의 친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부서운영비 집행 부적정

부서운영비는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직원 격려 또는 조직의 단합을 위한 경비(격려금 및 상품권 등 현금성 격려는 집행제한, 경·조사비 지급 및 일용직 식대 등 인건비성 보조금 집행 불가), 각부서 운영상 필요한 경비 중 소규모적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 수리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함

근거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2. 1월에 부서운영비로 2회에 걸쳐 침대를 구입(300,000원)하고 1개월 후 반납하는 등 회계관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2011년 기성회예산 학위전수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2012년 2월에 부서운영비로 학위전수식과 관련한 3건 216,500원(업무협약 77,500원, 평가회 67,000원, 용역직원 간담회 72,000원) 추가 집행한 사실이 있고, 물품 구매로 선풍기 2대 138,000원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

신·편입생 모집 홍보 장소 선정 및 복무관리 부적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II.3,1-8.여비’에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음

근거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	-----------------------------------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4. 7. 29.에 신·편입학생 모집 홍보를 위해 ‘신·편입학 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홍보 활동 예정지인 대관령 양떼목장(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소재, ○○지역대학에서 약 204Km 거리)이 △△지역대학에서 당일 출장으로도 동 홍보활동 업무를 수행(△△지역대학에서 출장지까지 약 144Km 거리)할 수 있음에도, ○○지역대학에서는 학장 ○○○ 등 6명에 대하여 2014. 7. 30.(수) ~ 31.(목)까지 1박 2일의 홍보 출장을 명(학장의 출장은 총장이 명함)한 후 출장을 이행한 6명에게 총 639,000원의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홍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4. 7. 30.(수)부터 1박 2일 출장을 명받은 5명은 출장 시작일의 하루 전 근무시간인 2014. 7. 29.(화) 오후 5시에 별도의 출장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함께 타고 ○○지역대학을 출발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이 있음

제 3 장

보안 관리
분야

3

보안관리 분야

문서보안 취급 및 관리 소홀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과 자체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근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74조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2011. 10월부터 2015. 5월 현재까지 문서보안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비밀의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보안업무추진계획(행정지원과)의 대외비 문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집행자 및 입회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자체 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과 시설방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일반보안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2 ○○지역대학에서는 2011. 1. 1.부터 2014. 4. 10.까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8건에 대하여 대외비문서관리기록부에 파기 집행자 및 입회자 확인을 대부분 하지 않았으며, 2014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행정지원과-4, 2014.6.12.)의 대외비 문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시 비상반출 우선순위표만 작성하고 파기 목록과 절차, 장소, 직원의 교육 등이 누락 되었으며, 2014년도 안전지출 파기계획을 파기하지 않았고, 2015년도 안전지출 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 4 장

회계 관리
분야

4

회계관리 분야

납세증명서 미제출 업체 대금 지급 부적정

납세자는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된 '시설물유지관리' 등 5건의 계약에 대한 용역 대금 지급 시 납세자(계약상대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지 아니하고 총 44건 1,247,808,2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분임계약관 결재 절차 부적정

총장이 당해 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을 임명하여 기성회규약과 이사회의 의결 및 기성회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대학장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음

근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5조제1항

사례1

○○지역대학에서는 '행정감사 수감준비 물품 구입'건 등 33건 14,309,070원의 지출원위행위를 기성회회계 ○○지역대학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하여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대금지급 시 일반지출로 분임계약관의 결재를 사후에 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음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예산은 사업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 있음

근 거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빔프로젝터 리모컨 구매’ 계약 건을 2013. 3. 6.에 체결함에 있어 시중가격 1개당 55,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터 리모컨(모델명: DLP-845S)을 계약상대자인 ○○○○로부터 1개당 132,000원의 단가로 총 11개 1,452,000원(부가세 포함)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제 5 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5

물품국유재산관리 분야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물품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물품관리대장 등)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근거 물품관리법 제24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례 ○○지역대학에서는 2011. 11월부터 2013. 12월까지 구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핸드스캐너(MS-5145) 등 79종 231개의 물품(취득가격총액: 108,286,420원)을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물품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